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글 | 이정득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1. 법안의 제정배경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은 대규모 자연재난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한 예방·대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피

해를 보더라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규모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의 10배 수준으로서¹⁾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이러한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제도는 거의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대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기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재난대비 실태를 분석하

고, 선진 외국의 민간기업 지원활동 및 제도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 재난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2. 법안의 주요내용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난관리표준의 제정·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 표준을 제정하고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이 포함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고, 기업은 재난관리 표준을 토대로 스스로 재난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재난관리활동 실행, 활동의 평가 및 활동 수정 등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재난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주 1) 05. 6~7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연간 평균 1,2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태풍 발생시에는 6,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자연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없어 정확한 피해 파악은 어려우나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제도가 없어 피해규모 등 현황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중소기업의 자연재해 피해현황)

(단위: 개사, 억원)

계	연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현재)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12,390	12,074	1,527	1,019	1,486	2,094	7,020	5,735	1,067 (932)	1,161 (1,057)	1,290	1,255	1,170	845	

※ () 안 수치는 목실피해액임

나.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안 제7조)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차별화된 지원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기관을 지정·설립하여, 자연재해 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인증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기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연재해 경감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안 제11조 및 제12조)

기업은 국가가 제정한 재난관리 표준에 따라 재해를 경감할 수 있는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추진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재해경감활동수립 대행자로부터 재해를 경감할 수 있는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재해경감 활동계획은 재난관리조직의 구성, 재난위험요인의 분류 및 평가, 상호원조 협약, 위기 관리체계 확립, 전략·대응·경감·복구 프로그램, 교육·훈련 전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지원

(안 제19조 내지 제23조)

(1) 재난관리표준 제공

기업이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난관리표준을 마련하고 기업에게 제공한다.

(2) 세제 지원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감세 혜택을 준다.

(3) 설비자금 지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지원한다.

(4) 자금지원 우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자금 지원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한다.

(5)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구매 등의 조달입찰 참여 시에도 가산점을 부여토록 지원한다.

마.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안 제24조 내지 제29조)

(1)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2) 기반시설 입주지원

우수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공장용지 및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전시관 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를 지원한다.

(3)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우수기업 및 단체, 국내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한다.

3. 예상 파급효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하여 국가는 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기업들은 이를 스스로 활용하여 재해경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가재난관리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재난 발생 전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 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기업중사자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인명·재산·기반시설 피해 등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고객 이미지 제고 및 기업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통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재난관리 체계의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된다.

4. 맺음말

본 법률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재해경감을 통한 국가 재난관리 능력의 향상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